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158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가.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1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2023. 5. 4.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1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은 2023차135 물품대금 사건에서 2023. 2.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원고에게 16,473,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16,473,56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1) C는 2023. 5.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각 유체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가 위 2023. 5. 4.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였으므로(제1회 변론조서 참조), C는 위 2023. 5. 4.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한다.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직원인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유체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를 포함한 6명의 직원들(피고, D, E, F, G, H)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물변제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즉 피고가 위 6명의 직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위 6명의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위 6명의 직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위 6명의 직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지 다른 직원들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임금채권 5,000만 원 보전을 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구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① 위 6명의 직원들 중 누구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원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② C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1호증의 각 임금체불확인서의 내용은, 위 6명의 직원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2023년 10월분 임금 내지 2023년 11월분 임금 등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인 2023. 5. 4.을 기준으로 위 6명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다. ③ 피고가 제출한 급여내역(을 제2, 3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인 2023. 5. 4.까지 위 6명의 임금은 다소

늦게 지급되는 경우는 있었으나 비교적 꾸준히 지급되었고, 그 후로도 비교적 꾸준히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2023년 4월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1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동산압류를 집행하려고 하자(별지 2 참조), C와 그 직원인 피고가 원고를 사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¹⁾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1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석

별지

1) 피고는 명시적으로 선의 주장은 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선의로 보기도 어렵다.